

# 고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2768호)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4. 04. 01.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4. 04. 08.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24. 04. 19. 산업경제위원회 상정 · 원안가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건축개발과장 정상호)

#### 가. 개정이유

- 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대상 범위에 노후 굴뚝을 추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- 소규모 노후 건축물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, 정산방법 등을 정함(안 제6조의2, 안 제6조의3)
- 건축물해체공사 현장점검 확인시기를 정함(안 제9조의2)

#### 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예산조치: 2024년 추경예산 편성 예정
- 합 의

1) 성별영향평가: 복지지원과(여성친화담당)

- 해당사항 없음[복지지원과-3283(2024. 1. 22.)]

2) 고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: 기획예산담당관(예산담당)

- 원안가결 [기획예산담당관-31622(2024. 2. 26.)]

#### ○ 기 타

1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4-124호

가) 예고기간: 2024. 1. 22. ~ 2024. 2. 11.(20일간)

나) 예고결과: 의견없음

2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4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
5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 조정제)

#### ○ 개정 목적

- 본 개정조례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,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,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근거 신설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 검토 내용

- (안 제6조)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에 관한 사항으로, 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대상 범위에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노후 굴뚝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- (안 제6조의2 ~ 제6조의3) 보조금 지원대상 및 신청, 정산서 제출 및 집행 내역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,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 대해 보수·보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- (안 제9조의2)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으로, 「건축물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서 정하도록 위임한 현장점검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,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, 필요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에 대해 보수·보강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근거 및 필요 사항 등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, 조례 개정 목적과 필요성,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,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4. 4. 19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